

국제앰네스티 규약

2017 국제대의원총회에서 개정

비전과 사명

1. 국제앰네스티의 비전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기준에 명시된 인권을 모든 사람이 누리는 세상이다. 이 비전을 추구함에 있어, 국제앰네스티의 사명은 이러한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고 종식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조사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핵심 가치

2.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적인 연대, 피해자 개인을 위한 효과적인 활동, 세계적인 범위의 활동,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 공정성과 독립성, 민주주의와 상호 존중이라는 원칙을 중시하는 인권 옹호자들이 모여 만든 글로벌 공동체다.

활동 방식

3. 국제앰네스티는 정부와 정부간 국제기구, 무장단체, 기업, 그 외의 비국가 행위자를 다룬다. 국제앰네스티는 인권침해행위를 정확하고,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폭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개별 사례의 사실관계와 인권침해 유형을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한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보고서로 공개되며, 회원과 지지자, 직원들은 정부 등을 대상으로 인권침해를 중단하라며 공개적으로 압력을 행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특정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활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정부에 법치주의를 준수할 것과 인권기준을 비준,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다양한 인권교육활동을 수행한다. 정부간 국제기구, 개인,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인권을 지지하고 존중할 것을 독려한다.

구조 및 책임

4.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대중 운동 조직이다. 이 조직의 '회원'이라 함은 국제앰네스티의 회원조직(지부 및 구조)과 국제회원¹을 말한다.

¹ 국제회원(International Members)의 자격은 지부와 구조가 없는 국가에 거주하면서 앰네스티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5. 국제엠네스티가 비전과 사명을 수행함으로써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람, 회원, 활동가, 지지자들에 대하여 국제엠네스티는 책임을 진다.
6. 국제엠네스티의 전체 구조는 다음과 같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제총회는 회원조직의 대표자와 국제회원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국제총회는 국제이사회(International Board)를 선출한다. 국제이사회와 전세계적인 활동은 국제사무국의 지원을 받는다. 회원조직, 국제회원, 국제이사회는 모두 국제총회에 책임을 지며 본 규약을 비롯해 국제총회가 비전과 사명, 핵심 가치, 전략목표(운동의 활동 방향을 제시하는 합의된 우선순위), 핵심규범(운동의 핵심 거버넌스 및 운영기준)에 따라 결의한 국제전략, 정책 및 기타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7. 본 규약은 최상위의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를 다룬다. 글로벌 거버넌스 규정은 본 규약을 보완한다. 본 규약의 조항과 글로벌 거버넌스 규정 또는 관련 문서 간 충돌이 발생할 경우 본 규약의 조항을 우선한다.

국제총회

8. 국제총회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본 기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a. 전략목표를 포함해 비전과 사명을 달성할 수 있는 글로벌 전략을 승인한다.
 - b. 국제이사회 임원을 선출하고, 감독하고, 해산시킬 수 있다.
 - c. 비전, 사명, 핵심가치 등 본 규약의 내용과 글로벌 거버넌스 규정, 국제총회와 관련된 위원회들의 권한과 관련 투표권 및 절차 등 운동과 연관된 거버넌스 절차의 개정을 승인한다.
 - d. 국제분담금제도를 승인한다.
 - e. 핵심규범과 같이 운동의 활동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요건들(core global requirements)을 승인한다.
 - f. 논란이 되는 인권 사안에 대한 정책 방향을 승인한다.
 - g. 국제이사회 및 지부로부터 보고와 제안을 받고, 권한 내에서 가능한 영역에 한해 의결한다.
 - h. 활동의 성과를 보고 받고, 책임을 묻는다.
9. 국제총회는 각 지부의 대표 1 인, 국제회원 대표 1 인의 의결권자로 구성된다. 이러한 의결권자는 '상임대표'라 한다.
10. 국제총회는 매년 1 회 정기총회를 갖는다. 어느 때라도 국제이사회 또는 단순 과반수의 상임대표의 결정으로 긴급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11. 국제총회는 각 지부의 대표 2 인과 국제회원 대표 2 인이 의결권 없는 대표자로서 상임대표와 함께 참석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지부 총 구성원수의 3 분의 1 당 청년 대표자 1 인(매회 교체함),² 국제회원 중 청년 대표자 1 인이 정기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긴급총회의 경우 상임대표만이 참석할 수 있다.
12. 국제총회는 임기 2년의 의장 1인을 선출한다. 의장은 최대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13. 국제총회는 상임대표 중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진행될 수 없다.
14. 국제총회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준비위원회, 국제추천위원회, 회원/지부지위검토위원회의 상임위원들을 선출한다. 네 번째 상임위원회인 재무감사위원회는 국제총회와 국제이사회의 활동을 모두 보조한다. 재무감사위원회는 국제총회에서 일부를 선출하고, 국제이사회에서 일부를 지명한다.
15. 국제총회는 국제이사회 전원을 동시에 해임하는 방법으로 국제이사회를 해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총회는 공석을 채우기 위해 새롭게 임시 이사를 선출할 수 있다. 국제총회에서 임시 국제이사를 선출하지 않을 경우, 국제총회 의장과 국제추천위원회가 공조해 임시 이사를 새로 지명하며, 이사회의 구성원이 최소 5 인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임시 국제이사회는 차기 국제총회가 소집될 때까지 활동한다.
16. 국제총회는 재적대표 및 출석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다음과 같은 안건은 재적대표 및 출석대표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a. 규약 개정
 - b. 글로벌 거버넌스 규정 개정
 - c. 국제분담금제도 또는 지부와 기타 조직간 재정 분배 관련 사항 개정
 - d. 국제이사회 및 국제총회 산하위원회의 해산
 - e. 국제총회 의장 해임
 - f. 17 조에 명시된 대상 외에도 추가로 다른 개인 및 조직에 의결권을 부여하는 경우, 그 대상은 국제총회가 그 목적으로 채택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투표

17. 국제총회에서는 각 지부당 하나의 투표권이 있다. 국제회원은 공동으로 하나의 투표권이 있다. 투표권은 상임대표가 행사한다.

²총회 참석자가 각 지부 당 4인에서 3인으로 감소하면서, 유스의 참여기회가 줄어들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지부들 중 1/3이 추가로 유스를 초청할 수 있게 함. (유엔기준은 유스를 만15세-24세로 규정함)

국제이사회

18. 국제이사회는 국제총회에 보고하고 책임을 진다.
19. 국제이사회는 앰네스티의 운동이 비전과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고 국제정책과 기준에 따라 활동하도록 전체를 이끈다³.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집행한다.
 - a. 국제분담금제도, 글로벌 거버넌스 절차, 국제기준, 전략목표 등에 관련해 국제총회의 승인이 필요한 안건을 제출한다.
 - b. 앰네스티의 재정과 위험요소를 감독한다.
 - c. 앰네스티의 평판과 자원을 감독한다.
 - d. 사무총장의 임명, 국제사무국의 연간 회계 및 예산 감사, 감사의 지명 등을 통해 국제사무국의 활동과 운영을 감독한다.
 - e. 앰네스티의 모든 분야에서 본 규약의 조항과 국제총회의 결의사항, 그 외 국제정책 및 국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한다.
 - f. 지부 및 기타 내부조직들의 설립을 승인한다.
 - g. 본 규약 34 조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 h. 매년 최소 1 회 이상 앰네스티전체와 국제사무국의 예산 및 재정 상태, 국제이사회와 활동과 이행 내용을 보고한다.
20. 국제이사회는 구성원은 재정담당관을 포함해 국제총회에서 9 명을 선출한다. 국제이사회는 자체적으로 호선이사 2 인을 추가 지명할 수 있다. 이렇게 지명된 호선이사는 국제이사회 결의 내용과 관련해 투표할 수 없다.
21. 국제총회는 국제이사들과 별도로 재정담당관을 선출한다.
22. 국제총회를 앞두고 국제이사회 선출이사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국제이사회는 임시 이사 2 명을 지명할 수 있으며 이들은 차기 총회까지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
23. 국제이사회 회의는 선출이사 최소 5 인 이상이 출석하면 소집될 수 있다. 국제이사회는 구성원들 중에서 이사회를 직접 선출한다.

³ 본문에는 ‘provide global stewardship’ 이라고 나와있음. 조직의 미션과 가치가 살아있도록 원칙과 절차를 제안하고 이끌어주는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음.

24. 국제이사회의 선출이사는 3 년의 임기를 수행하며, 최대 2 회 연임할 수 있다. 호선이사는 2 년의 임기를 수행하며 최대 2 회 임명될 수 있다. 국제이사회 선출이사는 같은 국가, 주 또는 지역에서 2 인 이상 선출될 수 없다.

지부(Section)

25. 지부는 각 국가, 주 또는 지역에서 캠페인, 옹호, 교육, 대중 동원, 언론 및 모금 등 활동을 수행한다.
26. 지부는 현지 회원에 대한 책임을 지며, 각 국가, 주 또는 지역의 회원과 지지자, 활동가와 함께 활동을 전개한다.
27. 지부는 국제총회에서 승인한 국제분담금제도에 따라 국제운동에 매년 재정적 분담금을 납부한다.
28. 지부는 각 국가, 주 또는 지역의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를 계획할 경우 국제사무국의 감독과 감수를 받는다.

구조(Structure)

29. 구조는 지부가 없는 국가, 주, 지역에서 활동을 수행한다.
30. 구조는 현지 회원에 대한 책임을 지며, 각 국가, 주 또는 지역의 회원과 지지자, 활동가와 함께 활동을 전개한다.
31. 구조는 일시적으로 운영되며, 지부로 승인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한다.

개인 및 국제 회원

32. 국제엠네스티의 비전과 사명, 핵심가치에 공헌하고 이를 공유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 회원이 될 수 있다.
 - a. 거주하는 지역의 지부 또는 구조에 가입하고 (가능한 경우) 해당 지부 또는 구조에 회비를 납부한다.
 - b. 거주하는 지역에 지부 또는 구조가 없을 경우 (가능한 경우) 국제사무국에 회비를 납부하고 국제회원이 된다.

탈퇴

33. 지부와 국제회원은 어느 때나 국제이사회에 서면으로 탈퇴의사를 고지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앰네스티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국제앰네스티의 모든 활동을(앰네스티 명칭과 로고 사용 포함) 중지해야 한다. 그 외의 개인회원은 어느 때나 해당 지부 또는 구조에 탈퇴의사를 고지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34. 국제이사회는 앰네스티운동의 평판과 온전함 또는 운영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현지 상황에 따라 불가피할 경우 회원의 탈퇴 또는 회원 자격 유예를 포함한, 회원조직 또는 국제회원의 회원 지위에 영향을 미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회원/지부지위검토위원회의 검토절차에 따라 실행될 수 있다.

국제사무국

35. 국제사무국은 국제이사회에 감독을 받으며, 앰네스티운동의 활동과 기능을 다음과 같이 지지하고 이행한다.
 - a. 사무총장은 외부에 앰네스티를 대표하여 활동한다.
 - b. 조사, 캠페인, 커뮤니케이션, 옹호 활동, 정책, 법률, 모금 등의 필요한 기능을 통해 앰네스티운동의 국제적인 인권 활동을 조정하고 수행한다.
 - c. 세계적인 전략, 정책,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조정, 시행, 감시, 평가, 보고한다.
 - d. 앰네스티운동의 거버넌스와 성장, 발전, 재정 건전성을 지원한다.
36. 사무총장은 국제사무국의 최고 책임자이며, 국제이사회가 지명한다. 사무총장은 국제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37. 국제사무국은 국제이사회를 대표해 국제앰네스티의 상표를 등록하고 지부와 산하기구에 상표 사용권을 발행하는 등 국제앰네스티 이름과 로고를 세계적으로 보호하고 그 사용을 관리한다.

(결의안 1.01)